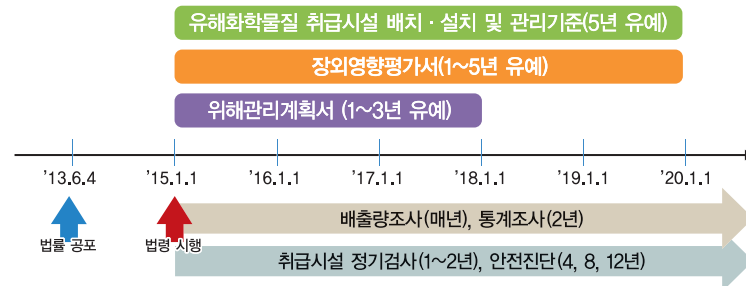


## 04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

| 구분          |      | 자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화<br>평<br>단 | 물질등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물질확인 지원사업</li> <li>• 공동등록 시범사업</li> <li>• 이행시나리오 마련</li> <li>• 시험자료 사용승인 등 수수료 감면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질성 시험분석 등</li> <li>- 등록예상 기준화학물질을 선정(7종), 참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동 등록 과정을 모의 이행</li> <li>- 제조·수입업종 표본기업 대상으로 이행 시나리오 수립 및 1:1 컨설팅 지원</li> <li>- 등록수수료 기준금액(20만원, 소량 10만원) 대비 중기업 50%, 소기업 80%</li> </ul> |
|             | 유해심사 | • 재정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형자료 검색·거래 지원시스템 구축</li> <li>- 국가소유 시험자료 목록화 및 검색 시스템 지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위해평가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물질보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역별 실무 교육</li> <li>• 업종별 통합 교육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설명회 및 실무교육(화해법 대응방안, 이행절차 등)</li> <li>- 업종별 집체교육 → 1:1 현장교육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화<br>관<br>단 | 장외평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행 능력 함양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턴트 방문·실습 지도</li> <li>- 유해물질 취급업체 장외영향평가 시범작업</li> <li>- 장외영향평가 범용 프로그램 마련·지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시설관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취급시설 안전 진단</li> <li>• 중소기업 재정지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및 무상·컨설팅</li> <li>- 보조: 기술지원 및 방지사설 개선비용 지원</li> <li>- 용자: 취약시설 교체·보수, 안전설비 설치 자금 융자지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사고대응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고대응 역량 강화</li> <li>• 대·중소기업 방재지원 공유 등 협력 강화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업별 맞춤형 사고대응 매뉴얼 작성 및 보급</li> <li>- 대응기관과 연계, 화학사고 공조체계 구축·시범운영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■ 화관법 로드맵



\* 장외영향평가서

- 사업장 밖의 제3자에게 인적·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이중, 삼중의 안전 개념에 따라 시설을 설계·설치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

**\*\* 위해관리계획서**

- 사고위험성이 큰 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경우 사고예방계획, 사고대응, 주민대피, 사고피해 제거·복구 등 내용을 시설 설치 전 수립

## 02 알고 계십니까?

## I 공통

**Q. 법과 하위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어디인가요?**

- A** •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([www.law.go.kr](http://www.law.go.kr))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([www.me.go.kr](http://www.me.go.kr), 법령/정책→입법·행정예고)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.

**Q. 법령상 모든 규정이 2015년 1월부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요?**

- A** \*규정별로 단계적 적용이 되며, 최장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.  
\*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은 고시 후 3년간 유예  
\*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은 최장 2019년까지 유예

## ■ 환경보

**Q. 신규법령에 따르면 제조·수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**

- A** •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통지를 받거나 등록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후에 제조·수입이 가능합니다.
- \*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등록 없이도 제조·수입 가능

**Q. 등록자료 작성 시,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의 정보를 활용해도 되나요?**

- A** • MSDS 내에 있는 화학물질 정보의 활용은 가능하며, 화학물질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등록자료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.

## ■ 화관법

**Q. 기존에 유독물 영업 등록을 했는데도 다시 등록을 해야 하나요?**

- A** • 다시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. 기존법에 따라 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 제한·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학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\* 장외영향평가서나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여부는 추가적인 확인 필요

Q. 장외영향평가서를 외부 전문가가 아닌 사내 인력을 활용하여 작성·제출해도 되나요?

- 네, 환경부는 안전관리 담당자 중 사내 근로자가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범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.
- 또한 전문 컨설턴트를 육성하여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하겠습니다.

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및 유관기관

## ■ 약도 및 연락처



-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, 상공회의소 회관 8층  
(중소기업경영 자문단 사무실 방향)

■ 화평법·화관법 산업계 도움 센터

- **내용** : 원스톱 온라인 상담(Q&A), 주요 법령·교육 자료, 교육 신청, 최신 정부 정책 등 공고
- **홈페이지** : [www.chemnavi.or.kr](http://www.chemnavi.or.kr)
- **전화번호** : 02-6050-1304~1308

## ■ 유관기관 연락처

| 기관명        | 관련부서                 | 대표전화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환경부        | 화학물질과/화학안전 TF팀       | 044-201-6779/6836 |
| 산업통상자원부    | 기후변화산업환경과            | 044-203-4245      |
| 중소기업청      | 규제영향평가과              | 042-481-4599      |
| 화학물질안전원    | 사고예방심사과              | 042-605-7041~2    |
| 국립환경과학원    | 위해성평가연구과             | 032-560-7211      |
| 한국환경공단     | 환경안전센터 화학물질 안전진단 TF팀 | 032-590-4982,4981 |
|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| 공동등록지원팀              | 02-3019-6723      |
|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|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        | 02-2183-1517      |



사업장 화학안전  
정부가 지원합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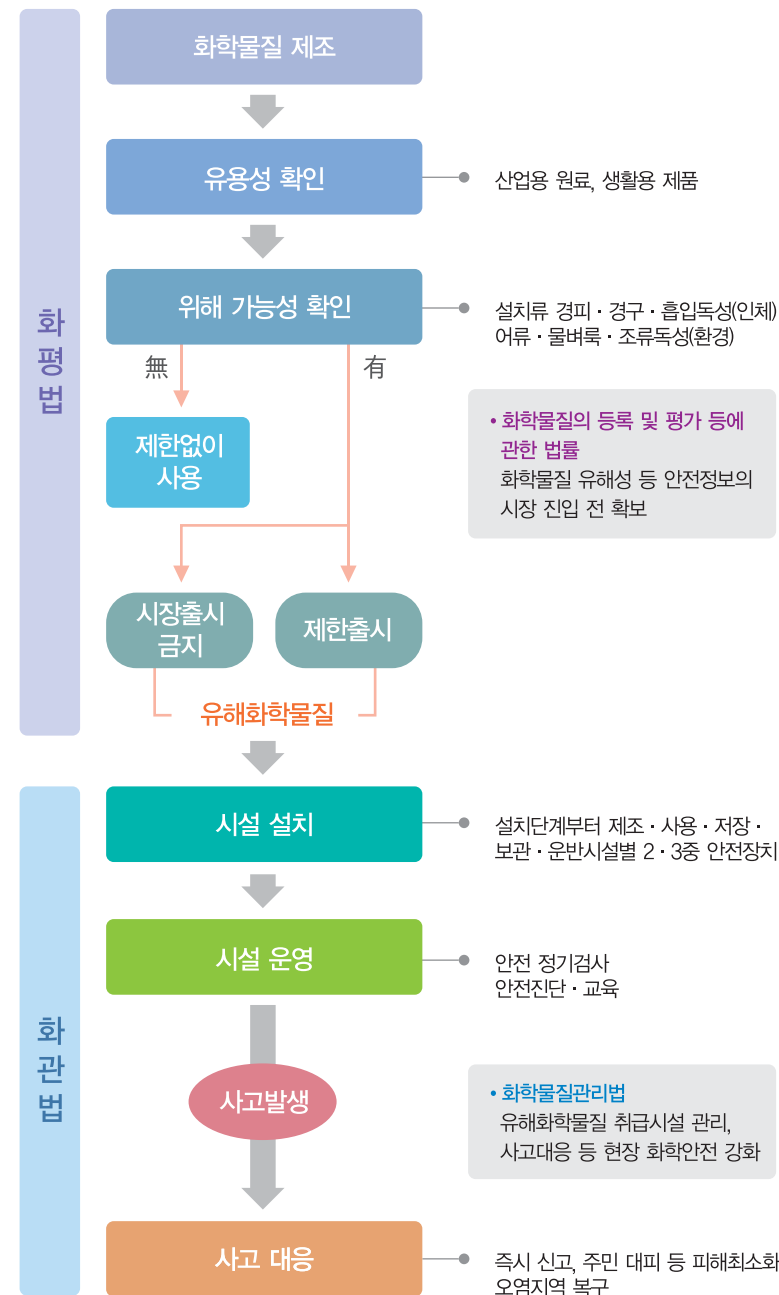
## 중소기업 전과정 지원 ●



**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**

환경부   산업통상자원부   중소기업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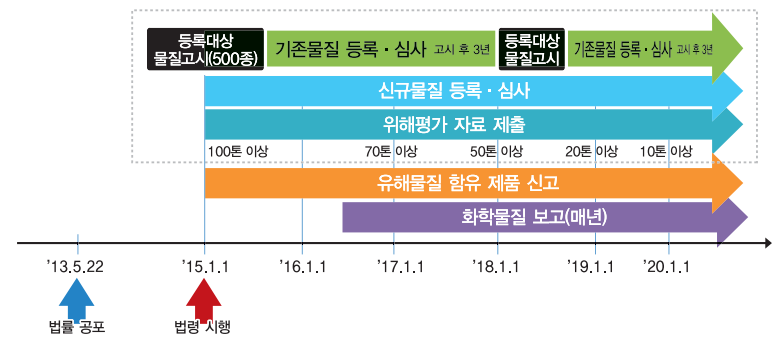
## 01 한눈에 보는 화학안전 관리 전과정



## 03 이것을 해야 합니다

| 구분          |          | 사업양태 |    |    |    |    | 이행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         | 제조   | 수입 | 판매 | 사용 | 보관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화<br>평<br>판 | 물질<br>등록 | ○    | ○  | ×  | ×  | ×  | • (기존물질) 고시되는 물질 1톤이상 제조, 수입자<br>• (신규물질) 모든 물질 제조, 수입자              | • (기존물질) 고시후 3년 이내<br>• (신규물질) '15. 1. 1부터 제조수입 전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유해<br>심사 | ○    | ○  | ×  | ×  | ×  | • 용도, 분류표시, 물리화학적 특성, 유해/위해성 자료 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위해<br>평가 | ○    | ○  | ×  | ×  | ×  | • 100톤 이상 제조, 수입자<br>• 추가자료 제출 등 심사·평가 대응(필요시)                       | 물질 등록시 자료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물질<br>보고 | ○    | ○  | ○  | ×  | ×  | • 기존물질(1톤), 신규물질 제조, 수입, 판매자<br>• 지난 1년간 취급물질 명칭, 취급량, 용도            | '16년부터 매년 6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화<br>관<br>리 | 장외<br>평가 | ○    | ×  | ×  | ○  | ○  | 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, 운영자<br>• 평가서 제출 및 결과에 따른 시설 보완<br>▶ 위험도 확인 ↔ 보완·조정 | • (기존시설) '19년 12월말까지 단계별 시행<br>• (신규시설) '15. 1. 1~(착공 30일 전) |
|             | 시설<br>관리 | ○    | ×  | ○  | ○  | ○  | 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, 운영자<br>• 시설배치, 설치, 관리기준 준수                         | '19년 12월말까지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사고<br>대응 | ○    | ×  | ○  | ○  | ○  | • 모든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, 운영자<br>• 화학사고시 조치 의무<br>▶ 즉시 신고,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조치    | '15. 1. 1~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화평법 로드맵



\* 기존화학물질(4만4천여종)

-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
-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「유해화학물질 관리법」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

※ 신규화학물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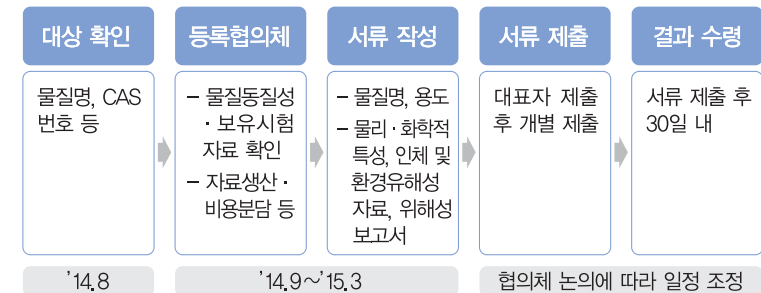
-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

## 05 이렇게 활용하세요

-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: [www.chemnavi.or.kr](http://www.chemnavi.or.kr)
- 국립환경과학원 : [www.nier.go.kr](http://www.nier.go.kr)
- 화학물질안전원 : [nics.me.go.kr](http://nics.me.go.kr)
-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: [www.compass.or.kr](http://www.compass.or.kr)
-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: [www.kcma.or.kr](http://www.kcma.or.kr)

## ■ 공동등록 모의 시범사업에 참여하시려면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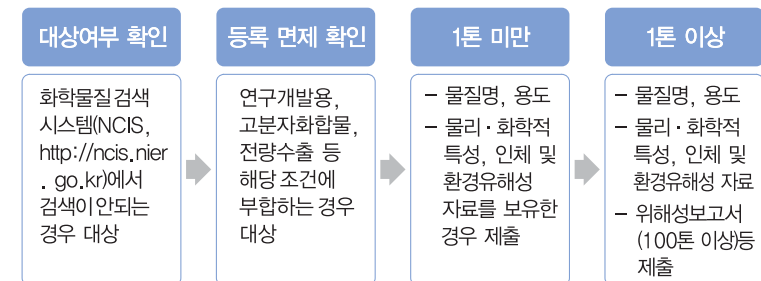
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(환경부 고시 예정)에 대한 공동등록을 법 시행 이전에  
이행해 보는 사업입니다.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으로 신청하셔서 무료 컨설팅  
지원을 받으세요.



문의 :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(02-6050-1304~8),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 
기업지원센터(02-2183-1517),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(02-3019-6730, 6719)

## ■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시려면?

'15년 1월부터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시려면 국립환경과학원, 등록면제 확인을 받으시려는 경우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도움을 받으세요.



 문의 : 국립환경과학원(032-560-7211),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(02-3019-6711)

실제 사업시기와 대상은 시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

##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싶으시면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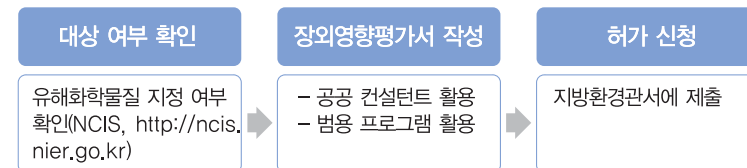
낮은 시설로 안전이 우려되시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취급시설 적정 관리여부, 법정서류  
구비 여부, 기타 사고위험에 대해 무료로 진단을 받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 
한국환경산업기술원,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에 보조나 용자를 신청해주세요.

| 구분 | 주관기관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혜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조 |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<br>(15~) | www.geca.or.kr<br>(매년 공지)             | 개선비용의 최대 70%<br>(업체당 2천만원 한도) |
| 융자 | 한국환경산업기술원<br>융자관리시스템 | loan.keiti.re.kr<br>(02-3800-252~260) | 고정금리, 업체당 10억원                |
|    | 중소기업진흥공단             | www.sbc.or.kr                         | 창업자금 · 신성장기반자금<br>소공인특화자금     |

 한국환경공단(032-590-4981~2)의 무료 시설진단은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1천톤 미만 중소기업이 우선 대상입니다.

## ■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장외영향평가를 하시려면?

'15년 1월부터 새로이 영업허가를 받으시려면 장외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.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활용하세요.



 문의 : 환경부 화학물질안전 TF(044-201-6834), 화학물질안전원(042-605-7045)

## ■ 신규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려면?

화학법령에 대한 실무교육이나 업종별로 특화된 기술지원, 장외영향평가서나 위해 관리계획서 작성 교육 등을 받으시려면 **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홈페이지**에서 신청 하시거나 **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** 또는 **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 센터**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 교육일정은 구체적 계획을 수립시 수시로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공지사항이나 뉴스레터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.

문의 :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(02-6050-1304, 1306),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  
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(02-2183-1511),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(02-3019-6750)